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2112-1996-580566

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86년10월25일	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 등계리 303-1	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.13㎡	도면편철장 제92책제210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27일 전산이기
2		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	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.13㎡	2000년8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년8월4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92책제210장
3		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 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길 14	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.13㎡	도로명주소 2012년9월11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92책제210장
4	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 [도로명주소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길 14	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.13㎡	2024년1월18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1월19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92책제210장
5	2024년9월2일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 [도로명주소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길 14	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층 72.7㎡	신청착오
				대위자 농업협동조합중앙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				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(충정로1가) 대위원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카단 250 부동산가압류결 정
6	2024년9월2일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 [도로명주소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길 14	연와조, 경량철골조 슬래브,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,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72.7㎡ 2층 35.15㎡	증축 대위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(충정로1가) 대위원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카단 250 부동산가압류결정

열 램 용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86년10월25일 제16677호		소유자 우인석 510306-***** 정읍군 소성면 등계리 32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27일 전산이기
2	가압류	2001년5월21일 제11610호	2001년5월2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	청구금액 금16,627,841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가압류 결정(2001카단800)	(정읍시지부)
3	2번가압류등기말소	2001년9월13일 제20840호	2001년9월12일 해제	
4	압류	2002년8월24일 제20664호	2002년8월22일 압류(강제46100-2651)	권리자 국 처분청 정읍세무서
5	가압류	2006년4월20일 제10420호	2006년4월20일 전주지방법원정 읍지원의 가압류 결정(2006카단785)	청구금액 금5,296,437원 채권자 순정축산업협동조합 214537-000017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-1 (순정축협정읍지소)
6	4번압류등기말소	2006년4월24일 제10721호	2006년4월20일 해제	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06년6월9일 제15540호	2006년6월9일 전주지방법원정 읍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06타경6042)	채권자 순정축산업협동조합 214537-000017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-1 (정읍지소)
8	5번가압류등기말소	2006년9월18일 제26537호	2006년9월15일 취하	
9	7번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말소	2006년9월19일 제26725호	2006년9월15일 취하	
10	임의경매개시결정	2008년6월13일 제17117호	2008년6월12일 전주지방법원정 읍지원의 경매개시 결정(2008타경5364)	채권자 황도현농업협동조합 211236-0007333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북리 237
11	10번임의경매개시결 정등기말소	2008년7월17일 제20295호	2008년7월16일 취하	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2	소유권이전	2024년9월2일 제16942호	2024년4월20일 상속	<p>소유자 우의정 830418-*****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홍개길 102-30</p> <p>대위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(충정로1가) 대위원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카단 250 부동산가압류결정</p>
13	가압류	2024년9월3일 제16992호	2024년8월30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250)	<p>청구금액 금47,592,958 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-0027690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(충정로1가) (정읍산림조합)</p>
14	가압류	2024년9월4일 제17067호	2024년9월4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263)	<p>청구금액 금29,013,840 원 채권자 정읍산림조합 211239-0000357 정읍시 명덕1길 64 (수성동)</p>
15	강제경매개시결정(13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)	2025년9월11일 제4836005호	2025년9월1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5타경339)	<p>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-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(충정로1가)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 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읍권역보증센터)</p>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근저당권설정	1986년10월25일 제16678호	1986년10월22일 추가설정계약	<p>채권최고액 금일천삼백만원 채무자 우인석 정읍군 소성면 등계리 321 근저당권자 소성단위농업협동조합 정읍군 소성면 보화리 181-2 공동담보 동소 303-1토지의 담보물에 추가</p> <p>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</p>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의하여 2000년 07월 27일 전산이기
2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6년4월20일 제9712호	2016년4월20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4월10일 15시52분22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2112-1996-580566

[건물]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03-1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우의정 (소유자)	830418-*****	단독소유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홍개길 102-30	1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3	가압류	2024년9월3일 제16992호	청구금액 금47,592,958 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	우의정
14	가압류	2024년9월4일 제17067호	청구금액 금29,013,840 원 채권자 정읍산림조합	우의정
15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9월11일 제4836005호	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	우의정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